

◎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-75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으로 부과(처분)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1일
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

1. 독촉 대상자

업체명 (대표자)	영업등록번호	소재지	체납액(원)	납부기한	납부 (고지)번호
프룻월드 (김*정)	20172800110	부산광역시 강서구	300,000	2024-10-25	01-97-2403-2887 -0000-059

2. 공고 내용

- 우리 청은 귀하의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이에,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
 - 나. 은행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) : 금융(공동)인증서 로그인→ 공과금→ 기금/기타국고→ 주민(법인)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입(고지)번호로 조회→ 납부
 - 다. 인터넷지로(giro.or.kr) : 금융(공동)인증서 로그인→ 납부(고지)번호로 조회→ 납부
-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(증가산금)이 최대 75% 부과됩니다.
 - 나.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, 제45~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 - 다.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라.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051-602-61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